

##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 자료는 2005. 12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2005년 12월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은 관련법을 또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농림부)

2006년 1월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합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증제도로 운영됩니다.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 시설에서 관리하고, 농업인 및 유통업자는 반드시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증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강화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수출확대 등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구 제도와 법규 대비표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신 설〉	○농산물 안전성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민간인증제도로 도입	농산물품질관리법 (2005. 8. 4)	농업기술지원과 ☎ (02) 500 - 1797 친환경농업정책과 ☎ (02) 500 - 1807 농립부 소비안전과 ☎ (02) 500 - 1838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농림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유통(APC, RPC, 도매업자)·판매(소매업자)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 후에는 소정의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농산물에 이력추적품 표시를 하며, 이력추적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구 제도와 법규 대비표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신 설〉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제도 도입	농산물품질관리법 (2006. 1. 1)	소비안전과 ☎ (02) 500 - 1836
○원산지표시위반 처벌강화 ○포상금상향조정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100만원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병과 가능) ○200만원	농산물품질관리법 (2006. 1. 1)	소비안전과 ☎ (02) 500 - 1837

### 3.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5. 9. 23일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10호 ; 2005. 9. 23)에 따라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부터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별표L. L. 가. (8). (나)]
  -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표시[별표L. L. 가. (2). (나)]
  - 식육의 종류(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부위명(안심, 목심, 앞다리 등)의 표시의무화
-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별표L. L. 가. (11). (나)]
  - 조사처리 축산물에서 조사도안은 주표시면에 표시
  -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 원재료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 표시
-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L. 2 가]
  -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 비가식케이싱의 소비자 안내 표시
- 유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L. 2 나]
  - 조제유류의 영양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조제방법에 따라 100ml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기타조제유류의 영양성분 함량표시

또한 개정된 고시에 따라서 2007. 1. 1일부터는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 ◆ 예외 : 주표시면이 30cm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 총 중량비율이 5% 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
-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 됨.[별표L 제(호 가목 (8) (가)의 규정, 제(호 가목 (10) (가) 1) 및 2)]

●신·구 제도와 법규 대비표

제 목	증 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p>축산물의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고시 2005 - 10호 : 2005.9.23)</p>	<p>가.축산물가공품중 원 재료의 함량표시 별표1. 1. 가. (8). [나] ○제품명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 량을 표시하는 경 우 그 함량 백분율 또는 중량)을 표시 나.포장육 및 수입식육 의 유형표시`별표1. 1. 가. (2). (나)] 〈신 설〉 다.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별표1. 1. 가. (11). (나)] ○조사처리된 축산물 임을 나타내는 직 경 5센티미터이상 의 조사도안을 표 시 라.식육가공품의 개별 표시`별표1. 2. 가] ○2가지 이상의 원료 식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식육 일부의 명칭을 제 품명으로 사용하여 서는 안됨 〈신 설〉</p>	<p>○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 도록 함</p> <p>○식육의 종류(예 쇠고기, 돼지고 기, 닭고기 등)와 부위명(안심, 목심, 앞다리 등)의 표시의무화</p> <p>○조사처리 축산물에서 조사도안 은 주표시면에 표시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 원 재료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 ○ ○”으로 표시</p> <p>○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 용가능</p> <p>○비가식케이싱의 소비자 안내 표시</p>	<p>축산물의표 시기준 (2006. 11. 1)</p>	<p>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축산물안전과 ☎ (031) 467 - 1761</p>

제 목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축산물의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고시 2005 - 10호 : 2005.9.23)	<p>마.유가공품의 개별표시 별표1. 2. 나]</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바.축산물가공품의 원재 료 표시 별표1. 1. 가. [8]. (가)]</p> <p>○인위적으로 가항 정 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 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함</p> <p>사.축산물가공품 영양표 시 의무화 별표1. 1. 가. (10). (가)]</p> <p>○다소비 제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 의무화: 소시지류, 우유류, 발 효유류, 가공유류, 아 이스크림류, 분유류</p>	<p>○조제유류의 영양표시는 영유아 에게 먹이는 조제방법에 따라 100ml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p> <p>○기타조제유류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p> <p>○사용된 모든 원재료명 표시 - 예의 : 주표시면이 30cm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 재료만을 표시. 총 중량비율이 5%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 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p> <p>○다소비 제품에 대한 영양소 표 시 의무화 대상 3가지 추가 (소 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 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p>	축산물의표 시기준 (2006. 10. 1)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축산물안전과 ☎ (031) 467 - 1761

#### 4.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원재료의 개념을 신설하고,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던 기존의 규정이 소비자 구매 정보 제공에 미흡하고 국제추세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 제외국 규정과 Codex 규정에는 면제사항에 해당되는 일부 원재료만을 제외  
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양성분 표시대상 확대 :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영양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에서는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을 의무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어린이 다소비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에 대하여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원재료명 표시 확대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확대 등 대폭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계에서 수용가능한 유예기간(1년 3개월)을 설정하여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양표시양식(식품등의 표시기준 2005-12호 [도2])을 제시하여 산업체 및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신·구 제도와 법규 대비표

제 목	중 점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p>○원재료 중 일부만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li> <li>-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3가지 용도, 70종 식품첨가물</li> <li>-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계,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1종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해당성분명을 표시</li> </ul> <p>○빙과류 제조일 표시 : 영업자의 자율</p>	<p>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료명 표시 면적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li> <li>※5% 이하의 함량제품의 원재료명 표시 면적을 위한 복합원재료명 규정 신설</li> <li>※식품첨가물의 명칭대신 간략명이나 용도로만 표시할 수 있는 첨가물군 신설</li> </ul> <p>○일부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일 : “연월”만을 표시</li> <li>-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li> </ul> </li> <li>- 종이재질로 날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li> </ul> </li> </ul>	<p>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청고시 2005 - 12호) (2006.9.8)</p>	<p>식품안전 정책팀 ☎ (02) 380 - 1726</p>

제 목	중 점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p>○영양성분 표시대상                      (1) 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2)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3)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과자류중 식빵, 빵                      (5) 면류중 숙면류, 유당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6) 레토르트식품                      &lt;신 설&gt;                      &lt;신 설&gt;</p> <p>&lt;신 설&gt;</p>	<p>○영양성분 표시대상                      (1) 특수영양식품                      (2)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3)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과자류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짬뽕                      (5) 면류                      (6) 레토르트식품                      (7) 음료류</p> <p>○영양소기준치 표시방법                      - 실제측정값을 기준으로 정수로 표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함</p> <p>○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대상식품                      - ml당 0.15mg 이상 함유하고 있는 액체식품                      ※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p> <p>○복합조미식품에 특정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반드시 표시</p>	<p>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청고시 2005-12호)                      (2006.9.8)</p>	<p>식품안전 정책팀                      ☎ (02) 380-1726</p>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요건 강화	<p>○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품을 위탁생산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탁 또는 의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는 GMP 적용 업소로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한함</p>	<p>○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품을 위탁생산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탁 또는 의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는 GMP 적용 업소로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한함</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자항 (2)                      (2006. 2. 1)</p>	<p>건강기능 식품팀                      ☎ (02) 380-1311</p>

## 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환경부)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은 인하하고, 청량음료, 주류 등의 기타샘물은 부과방식을 변경 하였습니다.

- 동일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 요구 반영
- 먹는샘물은 현행 평균판매가액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3.75%로 인하  
 톤당 3,867원에서 3,180원으로 인하
- 기타샘물은 현행 생산원가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수도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  
 톤당 38원에서 수도물 이용요금인 약 390원 수준으로 조정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부담금 비율이 약 181:1에서 9:1 수준으로 개선되어 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구 제도와 법규 대비표

제 목	증 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 추가	<신 설>	○먹는물에 수도물, 먹는샘물외에 먹는해양심층수 추가 -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설정·관리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유통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	○먹는물관리법 제3조 (2006.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제정예정)	토양지하수과 ☎ (02) 2110 - 3768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먹는샘물 : 평균판매가액의 7.5% ○기타샘물 : 샘물 생산원가의 7.5%	○먹는샘물 : 평균판매가액의 3.75% ○기타샘물 : 수도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의 더한 금액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2006. 7)	토양지하수과 ☎ (02) 2110 - 3768